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안 제70조)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달성하도록 완화함(안 제49조제1항).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3조의2제4항).
-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49조의2).
-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함(안 제71조제1항).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0조제7항).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51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 부여 대상이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¹⁾²⁾하고, 조문 신설에 따라 조정되어야

1) 안 제51조제1항 각 호 삭제에 따라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가 폐지되고, 전체 투자의무(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40퍼센트)만 존속하게 되므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의 부여 대상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안 제51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을 정비함.

2) 안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 부여대상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제2항도 정비

하는 인용조문을 수정³⁾하며, 그 외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

안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를(→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투자 의무 부여 대상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조정

3) 현행 제70조제5항이 조문 신설 및 위치 조정에 따라 안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62조제1항제4호를 함께 정비함.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